

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(제1차 교육위원회) 2021. 3. 15.(월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수 석 전 문 위 원

####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

## 검토보고서

1. 발 의 자: 이수완 의원

#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O 발의일자: 2021년 3월 3일

O 회부일자: 2021년 3월 5일

#### 3. 제안이유

O 충청북도 내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# 4. 주요내용

- O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2조)
- O 기본원칙(안 제3조)
- O 교육감의 책무(안 제4조)
- O 종합계획 수립 등(안 제5조)
- O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 설치(안 제6조)
- O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(안 제7조)
- O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 운영(안 제8조)
- O 교육행사 개최(안 제9조)
- O 보조금 지원(안 제10조)
- O 예산 지원(안 제11조)
- O 협력체계 구축(안 제12조)
- O 표창(안 제13조)
- O 시행규칙(안 제14조)

#### 5. 검토의견

- O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O 안 제3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의 기본 원칙을 세 가지로 정하고,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였음.
-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 5년 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, 학교의 장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.
- O 안 제6조에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두면서,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교육주간 운영, 교육행사 개최, 보조금 및 예산 지원,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고, 안 제13조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, 단체, 개인 등에 대하여 표 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문화예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